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임업후계자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대상기관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를 추가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 선정·선발신청서 제출처를 시장·군수로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인용하고 있는 법령관계 조문 및 용어를 현행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 본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령" 관련된 조문을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함(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 "임업후계자·독립가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 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 또는 독립가선정신청서를 제출토록 구체적으로 명시 함(제3조, 제7조)
-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 및 경비지원 대상에 (사)한국임업 후계자협회를 추가하고 시·도지사과 함께 시장·군수도 위탁교육 실시 및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산림청 훈령 제966호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8년 10월 31일

산 립 청 장

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규정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력개발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이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업후계자의 교육여비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독립가의 요건)의 내용 중 "영 제2조의2"를 "영 제3조"로 한다.

제7조(독립가의 선정 절차 등)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립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독립가의 선정절차 등) 제2항의 내용 중 "영 제2조의2"를 "영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	정	1995. 5. 4	훈령 제509호
개	정	1995. 10. 25	훈령 제534호
전문개정		1988. 6. 1	훈령 제635호
개	정	1999. 5. 17	훈령 제676호
개	정	2001. 2. 2	훈령 제719호
개	정	2002. 12. 17	훈령 제760호
개	정	2005. 7. 1	훈령 제834호
개	정	2008. 10. 31	훈령 제96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제2조 삭제(2005.7.1)

제3조(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 ① 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20일 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력개발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 ①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독립가의 선정절차 등

제6조(독립가의 요건)

- ① 영 제3조의 규정 중 "조립실적"이라 함은 독립가 선정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직접 조립한 실적을 말한다.
- ② 영 제3조의 규정 중 "산림"이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는 산림을 말하며, 공동소유 산림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의 소유로 본다.

제7조(독립가의 선정절차 등)

- ①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립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자영독립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우수독립가·모범독립가 또는 법인독립가 선정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우수독립가는 시·도지사가 선정한다.
 2. 모범독립가 또는 법인독립가는 산림청장에게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독립가 또는 법인독립가로 선정한다.
-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독립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독립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영독립가 또는 우수독립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립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독립가에 대한 지도·관리) 독립가의 지도·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9. 5. 1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선발·인정된 임업후계자·독립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2.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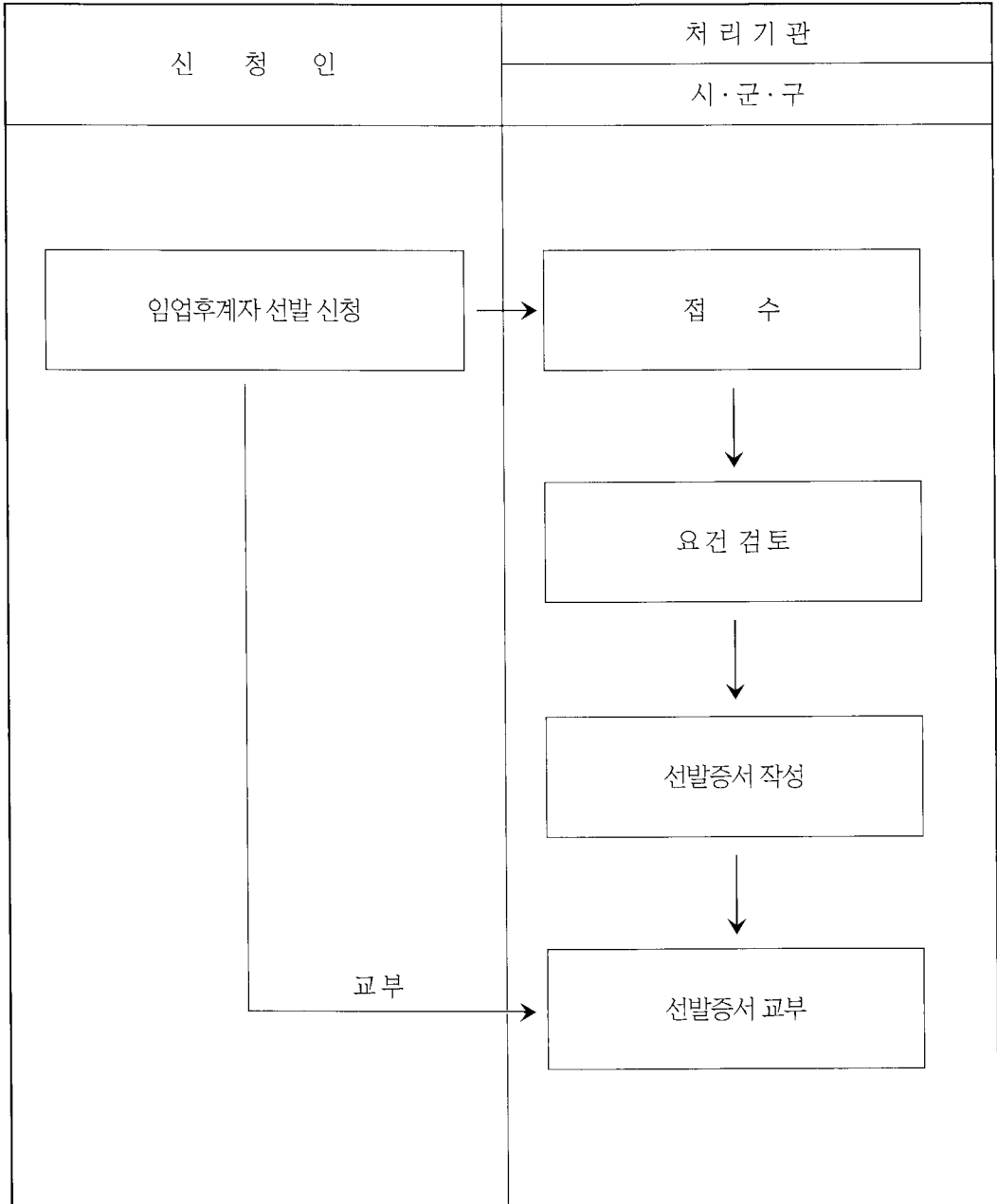
접수번호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 진 (반명합판)
신청인					성명 (한글)	(한문)
	주소			전 화	()	
산림경영 규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m ² , 임도 km				
임 산 물 생산계획	종류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계 획 기 간		
<p>본인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521-37911민
2002.12.17 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임업후계자증서

주소

성명

귀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위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사무관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임업후계자·독립가선발(선정) 현황보고서

1. 임업후계자 선발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 산림면적	임산물생산		선발 연도	직업	전화
				종류	재배면적			

2. 독립가 선정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산림		조림 면적	선정 연도	직업	전화
				소재지	면적				
					ha	ha			

※ 구분: 모범, 우수, 자영, 법인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h2 style="margin: 0;">임업후계자 · 독립가 관리대장</h2> <p>○인적사항</p>									
성명		구분		선발 (선정년도)					
주소				전화					
<p>※ 구분란에는 임업후계자·독립가로 기재하되 독립가의 경우 ()내의 모범, 법인, 우수, 자영으로 기재</p> <p>○소유산림변동</p>									
구분		산림소재지			면적		비고		
<p>※ 구분은 구입, 매도, 상속, 증여 등으로 기재</p> <p>○산림경영계획 인가내용</p>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 년월일	사업계획별						
			조림(ha)	육림(ha)	간벌(m³)	주벌(m³)	임도(km)	기타	
○ 산림경영현황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지원(보조+용자)내역		비고	
<p>※ 사업명에는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임도 등 세부사업별로 기재</p> <p>○ 임산물생산현황</p>									
연도별	종류	재배면적	생산량	지원(보조+용자)내역			비고		

521-37511비
'99. 5. 14일 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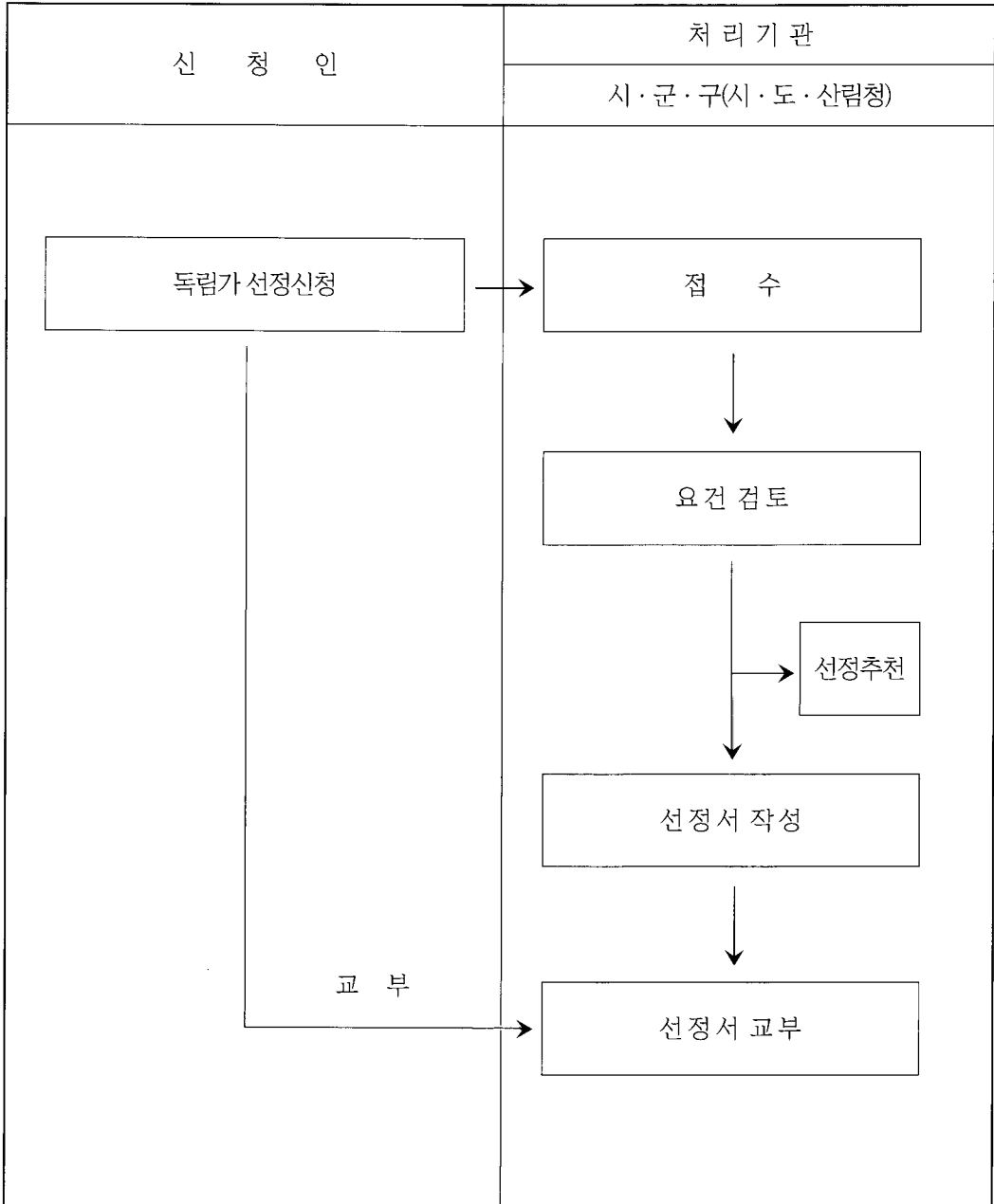
접수번호	독립가신청신청서				처리기간		사진 (반명함판)
					모범·법인 우수 자영	25일 15일 10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산림경영 규모	산림소재지 :						
	면적:	ha(소유산림		ha, 조림대부림·분수림		ha)	
	산림경영경력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 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m ³ , 임도	km
<p>본인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신청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가로 선정을 받고자 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 립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521-37211민
'99. 5. 14일 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모 범] [우수] 독립가 증서 [자 영] [법 인]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귀사)는 산림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경영함으로써 다른 산주의 모범이 되므로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모 범] [우수] 독립가로 선정합니다 [자 영] [법 인]	
년 월 일	
(인)	
※ 상호는 법인독립가의 경우에만 기재	

521-37411일
'99. 5. 14일 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